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9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92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345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종결 2022. 8. 17.

판결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345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일체의 제한물권 등의 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2005. 9.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790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제4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의 독직 축재물인데 위와 같이 E가 고위공직자로서 이를 은닉하고자 피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4.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1심판결의 제5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는 2007. 9. 2.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남편 E의 독직 축재물이라거나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가), 나)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하정,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별지)

부동산 목록

1. 화성시 C 대 1,117㎡

2. 화성시 C, D 지상

F동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성글지붕 2층 주택

1층 113.17㎡

2층 76.49㎡

부속건물

G동 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34.32㎡

H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99.17㎡. 팔.

